



제2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검 토 보 고 서

2023. 6.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용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 제안연월일 : 2023. 6. 2.
- 제출자 : 남양주시장

2. 제안이유

-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예산을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 주차관리과

3. 검토의견

-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되나 추진방식에 있어 재정사업과 위탁개발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22년 4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 캠프와의 재협의를 통해 시설관리 부분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연 4천5백만원, 20년간 약 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다시 제출한 사항임
- 검토결과 사업 자체내의 입장에서 실제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한 재무적타당성은 위탁개발(0.60)과 재정사업(0.55)모두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국가 또는 사회적 입장에서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추정하여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한

경제적타당성은 재정사업(1.07) 보다 위탁개발방식(1.17)이 더 높게 산출된바 위탁개발이 재정사업 보다 비용 대비 시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연구기관 : (재)한국재정경제연구원]

- 또한 지난 회기에 논의되었던 남양주도시공사 위탁을 통해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으나 확인 결과 도시공사가 자본금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에 미참여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캠코 위탁개발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4.20]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⑦ 생략